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0. 11. 4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0. 11.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11. 1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안사유

○ 현행 보조대상자 결정은 시장, 읍자권자는 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에게 일원화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임대주택 입주기간을 현행 전세기간에 맞추어 현실화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

주요골자

- 보조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수급자를 확대 조정하여 더 많은 세대에 복지혜택을 부여함(안 제1조)
- 보조대상자 선정심의를 시장(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구 기금관리심사위원회)에게로 위임(안 제5조)
-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질의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의 “차상위 계층”의 유권해석은? ○ 순위를 정할 때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1순위, 차상급자를 2순위로 보는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들의 최소생계비가 있는데 그것의 120%까지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우선순위는 없음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2호
의결년월일	2000. 11. 15 (제82회)

제출년월일 : 2000. 11.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현행 보조대상자 결정은 시장, 용자권자는 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에게 일원화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임대주택 입주기간을 현행 전세기간에 맞추어 현실화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

주요골자

- 보조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수급자를 확대 조정하여 더 많은 세대에 복지혜택을 부여함(안 제1조)
- 보조대상자 선정심의를 시장(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구 기금관리심사위원회)에게로 위임(안 제5조)
-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중 “영세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한다.

제1조 중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세대”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에 속하는 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세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 하며 제3호 중 “생활근거로 하고자 하는”을 “생활근거로 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구 기금관리심사위원회”로 하고 동 조제3항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5항의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부천시 관내에서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를 “거주지를 변경하는 세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임주기간) 임대주택의 임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임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내지 제15조 중 “영세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자</u>활보호대상자 세대를 선정하여 주택 임대를 보조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임주대상) (생략)</p> <p>1.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인 <u>자활보호대상자</u> 세대</p> <p>2. (생략)</p> <p>3. 주민등록표상 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부천시 관내를 <u>생활근거로 하고자 하는</u> 세대</p> <p>제5조(임주세대 선정) ① <u>신</u>장은 임주세대 신청시 세대의 생활상태 등을 조사하여 <u>시 생활보호심의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임주세대를 선정한다.</p>	<p>부천시<u>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u>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p> <p>제1조(목적) ……<u>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u> 중 자활의지가 있는 세대</p> <p>제3조(임주대상) (현행과 같음)</p> <p>1. ……<u>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u>……</p> <p>2. (현행과 같음)</p> <p>3. ……<u>생활근거로 하는</u>……</p> <p>제5조(임주세대 선정) ① <u>구청장</u>……<u>구 기금관리심사위원회</u>……</p>

②(생략)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임대계약 및 임대보증금) ①(생략)

②(생략)

③시장은 물가상승 등 경제적인 여건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대일로부터 매 1년 경과시마다 1할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④(생략)

⑤시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시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③구청장.....
.....
.....

제7조(임대계약 및 임대보증금)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구청장.....
.....
.....

④(현행과 같음)

⑤구청장.....
.....
.....